

목 차

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3
2.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35
3. 대화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42
4.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6
5.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0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7

제출년월일 : 1995. 3.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가.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성과 확대·증가된 세무행정 수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 임시방편적인 일용직 인력을 정리하고 읍면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세무인력으로 충원함으로써 세무업무의 충실을 기하고
 -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하여 각종 세금비리등 부조리 발생의 소지를 제거하며
- 나. 소방업무의 소방서 이관에 따라 읍면 소방차 운용 정원을 소방서로 이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읍면 7급이하 세무정원을 삭감 군 세무부서 보강
- 읍면 세무직 $\Delta 3 \Rightarrow$ 군 재무과 세무부서 3
- 나. 읍면 기능직(소방차 운전원) $\Delta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208"을 "211"로하고, 제4호중 "249"를 "24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평창군의 본청·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본 청 : <u>208</u> 명</p> <p>2~3. (생략)</p> <p>4.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u>249</u> 명</p>	<p>제2조 _____ _____ _____</p> <p>1. 본 청 : <u>211</u> 명</p> <p>2~3. (현행과 같음)</p> <p>4.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u>243</u> 명</p>

“600년 전통위에 새개속의 강원도”

강 원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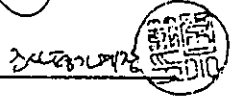
우 200 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0361)54-2011-2223, 2228 / 담당 김민기

문서번호 지방 12200- 208
 시행일자 1995. 2. 21(영구)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선결	군수		지	
접	일자	1995. 2. 22	시	
수	번호	2056	결	무군수
처리과	내무과		재	과장
담당자	김삼익		공	계장
			람	

제목 지방세무 기구·인력 보강지침 시달

재무과장
 세재계장



1. 지방 12200~1512('94. 11. 12)호의 관련임.
2.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지방세무 부정방지, 지방세정 개혁대책의 후속조치로 세무 기구·인력의 보강지침을 시달하니
3. 빠른 시일내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조례·규칙등 자치법규 개정·시행에 만전을 다하기 바라며 동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사전보고를 필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행한 후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첨부 : 지방세무 기구·인력 보강지침 1부. 끝.

1995년 3월 17일
 강원도 지방세무기구인력보강지침
 김삼익

강 원 도 지
 부지사 천철



수신처 거(08, 11), 더(01~18)

稅務 機構 · 人力 補強 指針

I. 補強의 背景

-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 · 도시화에 따라 지방세수의 규모와 세정업무량이 확대 · 증가했음을 감안, 인력의 충원 및 배치 활용에 효율성 도모
- 임시방편적인 일용직 인력을 정리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함으로써 세정업무의 충실과 세무사고 방지
-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같은 공무원이 취급함으로써 발생된 각종 세금비리 등 부조리 발생소지를 제거해야 할 필요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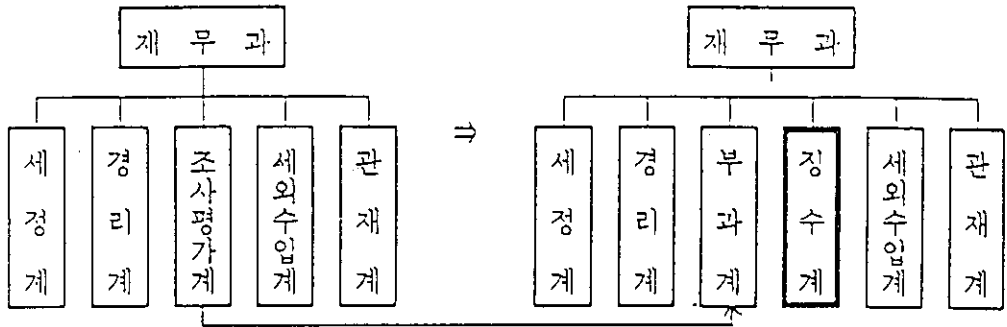


-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의 관건임을 고려 지방세정 여건 변화에 상응하는
 - ⇒ 세무행정 수행체계의 개선 및 기구 · 인력의 정비 보강이 필요함

2. 機構 및 人力補強

□ 機 構

- 징수계 신설 : 흥천군(조사평가계 ⇒ 부과계로 명칭변경)



- 명칭변경 : 10군
 - 세 정 계 ⇒ 부과계(부과기능)
 - 조사평가계 ⇒ 징수계(징수기능)

※ 부서간 기능조정은 별도지침 시달(세무부서)

□ 定 員

- 도 : 6급이하 3명 보강(세무조사, 감찰, 전산)
 - 현정원 범위내에서 상계하여 세무조사계와 세정계에 보강
- 시 : 세무인력 증원보강
- 군 : 읍면 세무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른 읍면 인력으로 이체 조정함(순증없음)
- 통합시 : 필요시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현행의 정원을 조정하여 보강

稅務 機構 · 人力補強 總括

자치단체명	기 구		현 정 원 (명)	보강정원 (명)	현 계 인 용 직 (명)
	현 행	신설 보강			
시 계		-	61	12	42
등 해	1과 5계	-	25	2	11
태 백	1과 5계	-	19	7	12
속 초	1과 5계	-	17	3	19

근 계	22계	1계	99	31	36
홍 천	2계	1계	9	4	6
횡 성	2계		9	2	3
영 월	2계		10	2	2
경 창	2계		9	3	
경 선	2계		9	3	5
철 원	2계		10	2	3
화 천	2계		9	2	3
양 구	2계		8	3	3
인 계	2계		8	4	5
고 성	2계		9	4	4
양 양	2계		9	2	2

정 원 승 인 서

기관별	소속	직명	급류	승인인원	비고
동해시	세무과	세무+행정	7급이하	7명	
	소계			7명	
대백시	세무과	세무+행정	7급이하	3명	
	소계			3명	
속초시	세무과	세무+행정	7급이하	2명	
	소계			2명	
홍천군	재무과	세무+행정	6급	1명	○ 징수계장
	"	세무+행정	7급이하	3명	
	읍면		7급이하	△4명	
	소계			0	
영월군	재무과	세무+행정	7급이하	2명	
	읍면		7급이하	△2명	
	소계			0	
평창군	재무과	세무+행정	7급이하	3명	
	읍면		7급이하	△3명	
	소계			0	
정선군	재무과	세무+행정	7급이하	3명	
	읍면		7급이하	△3명	
	소계			0	

기관별	소속	직명	급류	승인인원	비고
철원군	재무과	세무+행정	7급이하	2명	
	읍면		7급이하	△2명	
	소계			0	
화천군	재무과	세무+행정	7급이하	2명	
	읍면		7급이하	△2명	
	소계			0	
양구군	재무과	세무+행정	7급이하	2명	
	읍면		7급이하	△2명	
	소계			0	
인제군	재무과	세무+행정	7급이하	4명	
	읍면		7급이하	△4명	
	소계			0	
고성군	재무과	세무+행정	7급이하	4명	
	읍면		7급이하	△4명	
	소계			0	
양양군	재무과	세무+행정	7급이하	2명	
	읍면		7급이하	△2명	
	소계			0	
합	계			12명	

(시행일 : 1995년 2월 20일)

※ 단 세무+행정 복수정원은 '97. 1. 1 부터 세무직으로 단수직화

“600년 전통위에 세계속의 강원도”

강 원 도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0361)54-2011-2223, 2228 / 담당 양 창 환

문서번호 지방 12200- 348
 시행일자 1995. 3. 16 (영구)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선결	근 수	1995. 3. 17	지 시		
접	일자 시간	1995. 3. 17	결	부근수	국장
수	번호	3102	채	과 장	김
처 리 과		내무과	공	계 장	김
담 당 자		김삼국	람		

제목 광역소방체제로의 일원화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1. 그동안 의용소방대 체제로 군수가 관할하던 일부 읍면지역(8개군 1읍 26면)이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강원도조례 제2447호 '95. 3. 15)됨에 따라
2. 군 의용소방대 소방차 운전원 정원의 도 이체를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별첨과 같이 조정하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보고를 필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공포 시행토록 하기 바람.

첨부 정원승인서 1부. 끝.

원본대조필
 1995년 3월 7일
 직명 지방행정과장
 성명 김삼국

강 원 도 지

내무국장 전결

수신처 더(9, 11, 12, 13, 14, 15, 16, 18)

정 원 승 인 서

기관명	부서명	직명	직급	승인 인원	비고
횡성군	안흥면	지방기능직(운전)	8등급	△1	
	청일면	지방기능직(운전)	10등급	△1	
	둔내면	지방기능직(운전)	10등급	△1	
	서원면	지방기능직(운전)	10등급	△1	
	소계			△4	
평창군	진부면	지방기능직(운전)		△2	9등급1, 10등급1
	용평면	지방기능직(운전)	10등급	△1	
	소계			△3	
정선군	북면	지방기능직(운전)	9등급	△2	
	임계면	지방기능직(운전)	9등급	△2	
	소계			△4	
철원군	김화읍	지방기능직(운전)	9등급	△1	
	임계면	지방기능직(운전)	9등급	△1	
	소계			△2	
화천군	간동면	지방기능직(운전)	10등급	△1	
	사내면	지방기능직(운전)	10등급	△1	
	소계			△2	
양구군	방산면	지방기능직(운전)	10등급	△1	
	해안면	지방기능직(운전)	9등급	△1	
	소계			△2	

기관명	부서명	직명	직급	승인 인원	비고
인제군	서화면	지방기능직(운전)	9등급	△1	
	상남면	지방기능직(운전)	10등급	△1	
	기린면	지방기능직(운전)	9등급	△1	
	소계			△3	
양양군	현북면	지방기능직(운전)	10등급	△1	
	서면	지방기능직(운전)	10등급	△1	
	손양면	지방기능직(운전)	10등급	△1	
	소계			△3	
계			△23		

(시행일 : '95. 3. 15)

이 하 여 백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214
----------	-----

제출년월일: 1995. 3. .

제 출 자: 평 창 군 수

박 용 석

1995년 2월 21일 평창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1. 조례의 입법한계를 벗어남(제18조제11호)

○개정의결된 평창군건축조례 제18조제11호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위험물 및 처리시설(일반판매소 및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 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제45조제1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 하고 이를 위임받아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3중 제2호 카목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평창군건축조례에서 기타 유독물,총포등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 판매소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로 정한것은 건축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배됨.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를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중 제3호 및 제11호 내지 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 한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일반판매소 및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 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12.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세차장(너비8미터 이상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대지에 한한다) 및 정비학원
13. 동물관련시설(축사에 한한다)

제19조중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호를 삭제한후 제16호 내지 제18호를 제15호 내지 제17호로 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2. 동물 관련시설(축사에 한한다)

제20조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21조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호를 삭제 하며, 제11호 내지 제15호를 제10호 내지 제14호로 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22조중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29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52조 제1호 및 제2호중 지역구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 역 구 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

2.

지 역 구 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제53조중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제5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경우 3미터 이상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어 건축하여야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미터이상)

3. 제5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띄어 건축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구 분		거 리		외벽각 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 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직 각방향의 수평거리	
공동주택 (당해 용 도에 해 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 세 대 주 택 인 경 우	2층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		2.0 이상	1.0 이상	
		3층 또는 4세대 이 상인것	개구부가 있는곳	3.0 이상	2.0 이상	
	개구부가 없는곳		2.0 이상	1.0 이상		
	다세대 주택이 아닌 경우		연립주택		3.0이상(2층이하인 경 우에는 2.0이상)	2.0이상(2층이하인 경 우에는 1.5이상)
			아 파 트	20세대 미만	4.0이상으로	3.0이상으로
				20세대 이상	6.0이상으로	5.0이상으로

㉔ 영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얻어 합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5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
2.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의 건축물
3.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㉕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연결통로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 통로 출입구에 방화 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통행을 위한 적절한 규모로서,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서

□ 건축법 제45조(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수 있다.
- ③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도시계획법 제 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지정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④ 공원·유원지 또는 그 예정지안에 있어서는 공원 또는 유원지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당해 건축물의 주용도의 건축제한에 따른다.

1. 전용주거지역 :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일반주거지역 : 별표 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준주거 지역 :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중심상업지역 : 별표 5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일반상업지역 :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근린상업지역 : 별표 7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유통상업지역 : 별표 8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전용공업지역 : 별표 9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9. 일반공업지역 :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10. 준공업 지역 : 별표 11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11. 보전녹지지역 : 별표 1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12. 생산녹지지역 : 별표 13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13. 자연녹지지역 : 별표 14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별표 3)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단독주택
- 나. 공동주택
- 다. 기숙사
- 라. 노유자시설
- 마. 종교시설
- 바. 근린공공시설
- 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 집회장에 한한다)
- 아.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 자. 판매시설(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면적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의 건축물에 한한다)

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다.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제외한다)
- 라. 운동시설
- 마.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바.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사. 관람집회시설

아. 전시시설

자. 공장(인쇄·봉제·필립현상·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반도체 및 관련 장치제조업·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것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

차. 창고시설

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한다.)

타. 교정시설

파. 자동차관련시설

하. 동물관련시설

거. 발전소(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너. 방송·통신시설

더. 군사시설

러.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대화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

— 의회의견 청취 (안) —

평 창 군

대화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다.

(도지사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위임)

□ 주문내용

- 평창군수가 입안한 대화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평창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 대화 도시계획변경(재정비) 사유

- 1979. 1. 30일자 강원도고시 제9호로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된 대화도시계획에 있어서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인 집단마을 조성지의 유치로 도시계획구역의 확장 과 대화자동차정류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역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고하므로서 건전한 도시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 주요 변경결정 내용

○ 결정조서 및 도면 첨부

가. 도시계획구역면적 : 3,236,000㎡ → 3,297,341㎡ (증 61,341㎡)

나. 용도지역 변경

- 일반주거지역 : 632,000㎡ → 636,847㎡ (증 4,847㎡)
- 준 주거지역 : - → 54,672㎡ (증 54,672㎡)
- 일반상업지역 : 42,000㎡ → 43,650㎡ (증 1,650㎡)
- 생산녹지지역 : 154,000㎡ → 154,000㎡ (-)
- 자연녹지지역 : 2,408,000㎡ → 2,408,172㎡ (증 172㎡)

다. 도 로

- 대 로 : 1개노선 2,400m → 2,611m
- 중 로 : 3개노선 644m → 770m(폐지 1개 : 107m, 신설 1개 : 185m)
- 소 로 : 14개노선 6,500m → 6,284m(폐지 2개 : 217m, 신설11개 : 2,926m)

라. 공 원

- 근린공원 : 1개소 120,000㎡ → 6개소 124,640㎡(근린 1, 어린이 5)

마. 자동차정류장

- 버스정류장 → 1개소 1,650㎡(신설)

바. 학 교

- 대 화 국 교 1개소 25,620㎡(신설)
- 중 고 등 학 교 1개소 32,960㎡(신설)
- 대 화 중 학 교 1개소 22,783㎡(폐지)

□ 참고사항

○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 기 간 : '95. 2. 16 ~ '95. 3. 2
- 방 법 : 신문공고 2회(강원일보, 도민일보)

공 랑 공 고 검 토 결 과

의견제출자	의 건 내 용	계 획 입 안 내 용	반영내용
변영회장	장미아파트위로 자동차정류 장애정지 주위를 상업지역으 로 용도지역 변경 요망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은 교통 량 유발로 우회도로변에 녹 지대 설치, 이면도로계획등 으로 계획반영이 곤란하므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
대화 1리장	대화능협 건너편 기존의 건 축 밀집지역을 준주거지역으 로 변경요망	능협 건너편부터 우회도로까 지 준주거지역으로 계획	반 영
변영회장	하천 건너편 생산녹지지역을 전면 자연녹지로 변경요망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 하여하 할 사유가 없으며,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이 생산 녹지도 지역의 일부이므로 당초계획 존치	미 반 영
손 수 일	상대화교부분의 도로선형 변 경을 현제도로를 포함, 하천 쪽으로 변경요망	현재의 국도와 대화천 부분 의 도로(지목상)를 이용하여 국도 변경계획	반 영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6
----------	-----

제출년월일 : 1995. 3.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일상 교통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동차관련시설을 일반주거지역에도 일부 허용하여 완화하고 기타 용도지역 특성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부 강화하여 건축활동과 관련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미관지구 또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의무 설치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설치를 권장하도록함 (조례제14조)

나.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종전에는 자동차관련시설을 전혀 할수없었으나, 앞으로는 주차장·세차장 (너비8미터이상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한함), 경비학원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조례제18조제11호)

다.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각지역별 자동차관련시설중 폐차장 및 동물관련시설의 일부를 강화하고, 주거지역에서는 교정시설의 건축을 할수없도록 함 (조례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라. 법의 개정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단란주점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조례 제27조, 제28조, 제29조)

마. 종전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시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유형별 1미터에서 6미터까지로 하였고, 처마끝에서의 이격거리를 0.5미터에서부터 5미터까지 인것을 앞으로는 건축물로부터는 2미터에서 6미터로, 처마끝으로부터는 1미터에서부터 5미터까지로 각각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이 되도록 공지를 확보하게함(조례제 52조제1항제3호)

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하는 거리 제한사항중,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나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의 건축물 및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얻어 합벽하는 경우에는 띄우는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신설 하였음(조례제53조제2항)

사.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연결통로를 설치 하고자하는 경우 통로 출입구의 방화셔터등 기타사항이 적합할시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음(조례제 53조제3항)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를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중 제3호 및 제11호 내지 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 한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석유 및 가스판매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 저장 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12.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세차장(너비8미터 이상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대지에 한한다) 및 정비학원
13. 동물관련시설(축사에 한한다)

제19조중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15를 삭제한후 제16호 내지 제18호를 제15호 내지 제17호로 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2. 동물 관련시설(축사에 한한다)

제20조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21조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호를 삭제 하며, 제11호 내지 제15호를 제10호 내지 제14호로 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22조중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27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8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9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52조 제1호 및 제2호중 지역구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 역 구 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 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

2.

지 역 구 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 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제53조중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제5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경우 3미터 이상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어 건축하여야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 미터이상)

3. 제5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구 분		거 리		외벽각 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공동주택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인 경우	2층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		2.0 이상	1.0 이상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것	개구부가 있는곳	3.0 이상	2.0 이상	
			개구부가 없는곳	2.0 이상	1.0 이상	
	다세대 주택이 아닌 경우		연립주택	3.0이상(2층이하인 경우에는 2.0이상)	2.0이상(2층이하인 경우에는 1.5이상)	
			아파트	20세대 미만	4.0이상으로	3.0이상으로
				20세대 이상	6.0이상으로	5.0이상으로

㉔ 영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합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5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
2.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의 건축물
3.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㉕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연결통로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 통로 출입구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통행을 위한 적절한 규모로서,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군수는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각, 회화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로하지 아니한다.</p> <p>1. - 2. (생략)</p> <p>제18조 (생략)</p> <p>1. - 2. (생략)</p> <p>3. <u>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고등학교를 제외한다)</u></p> <p>4. - 10. (생략)</p> <p>11. <u>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다)</u></p> <p>12. <u>교정시설</u></p> <p>13. <u>동물관련시설</u></p>	<p>제14조 ----- ----- ----- ----- -----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 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8조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제외한다)</u></p> <p>4. - 10. (현행과 같음)</p> <p>11. <u>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석유및가스판매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저장탱크용량 1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한다.)</u></p> <p>12. <u>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세차장(너비8미터 이상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및 정비학원</u></p> <p>13. <u>동물관련시설(축사에 한한다)</u></p>

현행	개정안
14. - 17. (생략)	14. - 17. (현행과 같음)
제19조 (생략)	제19조 (현행과 같음)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u>자동차관련시설</u>	11. <u>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u>
12. <u>동물관련시설</u>	12. <u>동물관련시설(축사에 한한다)</u>
13. - 14. (생략)	13. - 14. (현행과 같음)
15. <u>교정시설</u>	<삭제>
16. <u>군사시설</u>	15. <u>군사시설</u>
17. <u>방송·통신시설</u>	16. <u>방송·통신시설</u>
18. <u>청소년시설</u>	17. <u>청소년시설</u>
제20조 (생략)	제20조 (현행과 같음)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u>자동차관련시설</u>	12. <u>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u>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21조 (생략)</p> <p>1. - 8. (생략)</p> <p>9. <u>자동차관련시설</u></p> <p>10. <u>등물관련시설</u></p> <p>11. <u>발전소</u></p> <p>12. <u>군사시설</u></p> <p>13. <u>교정시설</u></p> <p>14. <u>관광휴게시설</u></p> <p>15. <u>청소년시설</u></p>	<p>제21조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u></p> <p><삭제></p> <p>10. <u>발전소</u></p> <p>11. <u>군사시설</u></p> <p>12. <u>교정시설</u></p> <p>13. <u>관광휴게시설</u></p> <p>14. <u>청소년시설</u></p>
<p>제22조 (생략)</p> <p>1. - 14. (생략)</p> <p>15. <u>자동차관련시설</u></p> <p>16. - 21. (생략)</p>	<p>제22조 (현행과 같음)</p> <p>1. - 14. (현행과 같음)</p> <p>15. <u>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u></p> <p>16. - 2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7조 (생략)</p> <p>1. (생략)</p> <p>2. <u>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u></p> <p>3. - 12. (생략)</p>	<p>제27조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것에 한한다)</u></p> <p>3. - 12. (현행과 같음)</p>
<p>제28조 (생략)</p> <p>1. - 2. (생략)</p> <p>3. <u>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u></p> <p>4. - 14. (생략)</p>	<p>제28조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u></p> <p>4. - 14. (현행과 같음)</p>
<p>제29조 (생략)</p> <p>1. - 3. (생략)</p> <p>4. <u>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u></p> <p>5. - 14. (생략)</p>	<p>제29조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한다)</u></p> <p>5. - 14. (현행과 같음)</p>

제52조(생략)

현행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용도	지역구분	띄어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축선
		1천제곱미터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물저장소·유독물관내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폐차장·정비공장	<u>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u>	4	6	모든 건축선

개정안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용도	지역구분	띄어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축선
		1천제곱미터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물저장소·유독물관내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폐차장·정비공장	<u>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u>	4	6	모든 건축선

현 행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용 도	지 역 구 분	띄 어 야 할 거 리		적용대상 건축선
		1천제곱미터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창고시설·운수시설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는 제외(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	3	4	주된 도로의 건축선

개정안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용 도	지 역 구 분	띄 어 야 할 거 리		적용대상 건축선
		1천제곱미터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창고시설·운수시설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	3	4	주된 도로의 건축선

개정안

3. (현행과 같음)

(단위 : 미터)

구 분		거 리		외벽각 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치마끝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공동주택 (당해 용도에 해당 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세대 주택인 경우	2층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것		2.0이상	1.0이상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것	개구부가 있는곳	3.0이상	2.0이상
			개구부가 없는곳	2.0이상	1.0이상
	다세대 주택 이 아닌 경우	연립주택		3.0이상 (2층이하인 경우에는 2.0이상)	2.0이상 (2층이하인 경우에는 1.5이상)
		아파트	20세대 미만	4.0이상	3.0이상
20세대 이상	6.0이상		5.0이상		

현 행	개 정 안
<신설>	<p>② 영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합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의 건축물 3.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p>③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연결통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통로 출입구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통행을 위한 적절한 규모로서, 도시 미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p>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8
----------	-----

제출년월일 : 1995.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94. 9. 1 토지관리 업무가 도시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소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토지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 도시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함. (제3조제3항)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도시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개
<p>제3조(구성) 생략</p> <p>② 생략</p> <p>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u>도시과장</u> 으로 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한다.</p> <p>(개정 '92. 12. 30)</p>	<p>제3조(구성)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재무과장</u> - - - -, - - - - - - - - - - - - - - -</p>

관 계 법 령 발 취 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89.8.18 대통령령제12781호)

제14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

1.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